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4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12월 19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내용 중 ‘문화도시발전계획’을 ‘문화도시종합계획’으로 변경하고, ‘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’ 관련 조항을 삭제함

2. 주요골자

- 안 제5조제1항 중 “문화도시발전계획”을
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하며,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,

안 제11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문화도시발전계획”을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하며,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,

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정안	수정안
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문화도시발전계획</u>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6.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생활문화화지원단장(이하 “지원단장”이라 한다)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11조(위원회)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(생략)</p>	<p>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검사·보고 등) (생략)</p>	<p>제12조(검사·보고 등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4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부칙 (생략)</p>	<p>부칙 (생략)</p>

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문화단체”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동아리”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.
3. 그 밖의 용어의 뜻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2조를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
4.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
5.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문화시설, 동아리,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
 2.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3.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 4. 생활문화단체,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
 5.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③ 개인·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
 2.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
 3.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4.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
 5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 6.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·홍보·진과
 7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)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등에 관한 사항
2.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·추진 등에 관한 사항
3.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검사·보고 등)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